

## 회계감사 수행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고 영 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상장폐지 기업의 증가, 근절되지 않는 분식회계 관행, 회계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비감사분야 진출 강화 움직임 등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확보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중심으로 독립성 기준 준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립성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 (1) 이기적 위협 :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 (2) 자기검토 위협 :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3) 변호위협 :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4) 유착위협 :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5) 압력위협 :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신적 독립성은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함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한다. 외관상 독립성은 안전장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회계감사팀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는 자는 모든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의 독립성 위협 정도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업무는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는 정신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독립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회계감사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위해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회계감사팀의 구성원과 감사대상정보인 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간의 특정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회계감사대상(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임기간동안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회계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을 포함한 회계감사팀이 업무를 착수한 날로부터 감사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보고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이거나 그 이후에 업무를 수임한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임이전인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재무제표의 회계기간 이후에 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 및 사업적 관계가 있거나 당해 의뢰인에게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그 이후에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착수한 경우로서, 감사업무

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감사업무를 해당 감사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비감사업무가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 (1)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함.
- (2)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의 전부를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함.
- (3)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을 해당 감사업무에서 제외시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파트너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자신의 측근가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과 그 측근가족간의 관계의 성격과 그 측근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 위협이 발생

한다.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기적 위협이 발생한다. 회계법인등이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회사와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는 채무 이외에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거나,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와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는 채무 이외에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회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이외에, 3천만원(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의 예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회계법인이나 회계감사팀의 구성원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나 그 경영자간에 형성된 친밀한 사업관계 또는 회계법인 등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간에 형성된 친밀한 사업관계는 상업적이거나 일반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수반할 것이며, 이기적 위협과 압력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재무제표감사의뢰인 또는 그 지배주주, 임원 또는 기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자와의 공동투자에서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2) 회계법인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서비스나 상품을 결합하여 일괄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3) 회계법인이나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거나 마케팅을 수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은 재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등과 감사업무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가능한 유일한 일련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사업관계를 종료함.
- (2)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경미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액을 감소시킴.
- (3)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행을 거절함.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과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기적 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 관계의 친밀도 및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다른 개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 내부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관련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행기간동안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재무제표감사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을 회계감사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친밀도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당 개인을 회계감사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경우의 유일한 대책은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직원으로서,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의 작성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해당 개인을 회계감사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과거에 회계감사팀의 구성원 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현재에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재무제표감사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

당 회계법인이나 회계감사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개인과 이전에 이 개인이 소속 되어 있던 회계법인간에 여전히 중요한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기적 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고용되거나 고용될 것을 알고 있고,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팀 구성원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 계획 수정의 적절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함.
- (2) 경험이 충분히 있는 회계감사팀을 배정함.
- (3)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 (4)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함.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이기적 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재직 당시 작성하였거나 평가하였던 재무제표감사대상정보 또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업무의 보고대상기간동안에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재무제표감사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경우에 발생하는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을 회계감사팀에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

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입할 수 없다.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 위협과 이기적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이러한 임원직을 수락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재무제표감사업무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회사사무관리직(Company Secretary)의 업무범위는 인사관리와 기록 및 등기사항의 유지와 같은 행정업무에서부터 기업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거나 내부감시기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위는 당해 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기능을 의사록의 작성과 법적 문서의 유지와 같은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업무로 제한하여야 한다.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를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상당기간 계속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 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을 합하여 7년 이하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2) 교체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교체된 때로부터 2년동안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감사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2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감사업무를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왔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은 자신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그 지식과 기술을 감사업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휘하여 생기는 효익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비감사업무를 제공함으로써 회계감사팀은 종종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회계감사팀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의뢰인이 직면하는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비감사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등 또는 회계감사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기적 위협이나 자기검토위험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다음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 (1)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하는 행위 또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
- (2) 회계법인의 권고사항 중 특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행위
- (3)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경영자의 역할로 보고하는 행위

다음의 활동은 이기적 위협 또는 자기검토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 (1)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 (2)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직원의 정상적인 활동성과를 감독하는 경우
- (3) 거래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예를 들어, 구매 주문서,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시간 기록카드, 판매지시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기 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업무 배정을 조정함.
- (2) 회계법인과 회계감사팀의 독립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해 줄 공인 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 (3) 기타 법규상의 관련 안전장치를 적용함.

그리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 포함)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계법인이 세무업무, 소송지원서비스, 고위경영자의 모집 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의뢰인의 감사등과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지원한 후,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비록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더라도 회계기록 유지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영자에게 있다.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한 회계법인등의 구성원이 경영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대해서는, 이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정, 거래 또는 기타 회계기록에 대한 회계 처리의

결정, 변경 또는 재분류

(2) 거래의 결제 또는 승인

(3)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 또는 변경(가치평가의 가정들에 대한 의사결정 포함)

가치평가는 미래 추정과 관련된 가정의 수립,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적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자산, 부채 또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한 가치평가업무의 결과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상당한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매도목적의 가치평가가 발생시키는 자기검토위협에 대해서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재무제표감사업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기업금융업무, 기업금융 관련 자문 또는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위협과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떤 기업금융업무는 해당 위협이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알선, 중개 및 인수하는 활동은 감사업무의 제공과 양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구속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을 정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완수하는 활동은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우에도,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 기준을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함과 아울러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통하여 독립성 준수여부와 정도를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감시·감독함으로써 재무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부여라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제도의 본래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